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5조(차량교체) 이사장은 차량이 별지 제1호의 <u>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.</u></p> <p>다만,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.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1.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</p> <p>2.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지 제1호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</p> <p>3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등에 따른 예</p>	<p>제5조(차량교체) ① 이사장은 차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. 다만,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.</p> <p>1. 별지 제1호의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</p> <p>2. 최초 등록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.</p> <p>1.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</p> <p>2.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지 제1호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</p>

<p>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</p> <p>4. 이사장이 정부 정책 또는 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<p>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 특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</p> <p>3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등에 따른 에 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</p> <p>4. 이사장이 정부 정책 또는 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
<p>제9조(차량관리 부서) ① 차량총괄부서장은 공단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 관리부서를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문화체육본부 - 체육시설운영처, 어린이 대공원, 청계천관리처</p> <p>2. 복지경제본부 - 상가운영처, 추모시설운 영처(출.퇴근버스), 장애인콜택시운영처 등</p> <p>3. 도로교통본부 - 도로관리처, 도로환경처, 교통정보처, 교통시설운영처 등 (순찰차량, 고 소차량, 작업차량, 청소차량, 업무용차량) 등</p> <p>4. 시설안전본부 - 공사감독1,2,3처, 공동구</p>	<p>제9조(차량관리 부서) ① 차량총괄부서장은 공단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 관리부서를 지 정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1. 삭제</p> <p>2. 삭제</p> <p>3. 삭제</p> <p>4. 삭제</p>

<p>관리처 등 (업무용,공사감독차량)</p> <p>5. 경영지원본부 - 감사실, 기획조정실, 인사처, 총무처, 미래전략실 등 (전용,의전,업무용,출,퇴근버스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5. 삭제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